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12·29여객기참사피해구제및
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은 참사로 인한 신체·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,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음. 이에 따라,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기간과 같이 1년으로 한정하여, 질병 휴직기간을 경력평정·승급기간·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개정함으로써 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.

또한,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 반영하여, 희생자 자녀 외 피해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법령에 비해 확대 운영 중임. 이에,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실제 운영에 맞추어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) 법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인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평정,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. 다만, 총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입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“2025년도에”를 “2028년도까지”로, “2학기”를 “4학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2(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) 법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인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평정,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. 다만, 총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입한다.
제10조(교육비 지원)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·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~ 3. (생략) 4.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(12·29여객기참사 당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<u>2025년도에</u>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): <u>2학기</u> 이내의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	제10조(교육비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8년도까지</u> ----- ----- <u>4학기</u> ----- ----- -----

② · ③ (생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	
연 락 처	(044) 201 - 5456